

勞 動 部

勞 動 部

1. 總 括

지시사항 건수		완 료	관리종결	추진중		미착수	비 고
				정 상	부진		
총 계	28	19	-	9	-	-	-
단독주관사항	10	6	-	4	-	-	-
공통지시사항	18	13	-	5	-	-	-

2. 指示事項 目錄

○ 完了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완료연월일
47	03-45-01	노사정위원회 발족	1998. 6. 3
66	06-45-02	6.18발표된 기업부실판정 결과 후속조치의 철저한 조치	1999.12.20
193	03-45-04	노사정위원회 법적 근거마련	1999. 8 .6
275	03-45-06	추석대책의 만전	1999. 9.22
295	05-45-07	노동계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	2001. 2.28
440	05-45-10	중소기업 근로자 보호	2001.12.31
48	08-70-03	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	2000.12.30
137	03-70-08	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	2000.12.30
138	08-70-09	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	1998. 9.30
157	09-70-12	방일 후속조치 철저	2001. 6.30
164	07-70-15	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	2000. 3.31
175	08-70-16	공정한 인사행정	1999.12.20
264	08-70-25	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	1999. 9.30
282	08-70-29	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	2000. 3.31
304	03-70-32	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	2000. 3.24
382	08-70-41	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	2000. 9.10
386	03-70-45	공기업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개선	2001. 2.28
410	08-70-50	설 종합대책 마련	2001. 1.22
422	08-70-51	인사청탁 근절	2001.12.31

▲ '98-'00년 완료사항은 「1998년-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」 책자 참조요망

○ 管理終結事項： 해당 사항 없음

○ 推進中인 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비 고
10	03-70-01	실업종합대책 세부대책 수립 추진	정상
77	03-45-03	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출	"
337	05-45-09	노사참여형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	"
530	05-45-11	주 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시행	"
366	09-70-39	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	정상
392	03-70-46	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	"
397	03-70-48	공공부문 노사분규 철저 대처	"
521	05-70-57	여성의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	"
531	07-70-58	전자정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(4대보험의 연계정보화 사업에 철저)	"

3. 完了指示事項

1) 勞働界 問題에 對한 對策樹立 : 295(05-45-07)

가. 指示內容(1999년 12월 7일, 제50회 국무회의시)

- 노동계와의 문제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
-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양측이 서로 타협할 여지가 있는 만큼 노동부장관은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기 바람

나. 措置內容

- 노사정위원회 특위·소위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노사간의 견해차이를 해소하여 합의안 마련
 - '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위원(안)을 정부에 건의('99.12.15)
-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의견 조율 및 당·정 협의
 - 정부는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의 소모적인 논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, 공익위원(안)을 토대로 입법(안)을 마련하여 '99.12.28 국회에 제출하였으나
 - 국회는 노사의 반대 및 총선일정 등의 이유로 처리유보
 -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
 - 노사의 재논의 요구에 따라 '00.4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
 -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은 '00.12.21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나
 - 전임자 급여문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
 - 노사정위원회는 금년 2월내 합의도출을 위하여 '01.1.9부터 노사정 간사회의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한 결과
 - '01.2.9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 시기를 '06.12.31까지 5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
- 조속한 입법의 추진
 - '01.2.17 당정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, 2월 임시국회(제219차)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
 - 법개정시 노사정 합의사항 외에 후속조치 사항(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시한을 '06.12.31까지 연장) 및 '99년 정부입법(안)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던 규제완화 관련사항도 함께 추진하기로 함
 - '01.2.19 이상수 의원 등 13인외 12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 개정법률(안) 국회에 제출
 - ※ 대체토론과정에서 단체협약 신고제,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의무 및 단체협약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조항은 현행 유지기로 함
 - 환노위('01.2.23), 법사위('01.2.27) 의결을 거쳐 '01.2.28 국회 본회의 통과
 - '01.3.28 개정 법률안 공포·시행

다. 事業成果

-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노사간 신뢰형성 및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

2) 中小企業 勤勞者 保護 : 440(05-45-10)

가. 指示內容(2001년 2월 2일, 노동부 업무보고서)

-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
-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

나. 措置內容

-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
 - 2000.10.23 노·사·정 법제정 합의
 - 2000.11.25 법안 국회제출(민주당 신기남 의원 등 118인 공동발의)
 - 2001.2.23 법안 환노위 심의 의결
 - 2001.6.26 법안 법사위 심의 의결
 - 2001.7.18 법안 본회의 의결
 - 2001.8.1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
 - 2001.12.27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정
 - 2001.12.31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정
- 성과배분형 신(新) 우리사주제도 도입
 - 기업의 자사주·금전 출연 유도, 장기보유방안 마련,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
 - 기업출연금 손비인정, 근로자주식구입비 소득공제, 대주주출연금 소득공제, 3년이상 보유 시 저율과세 등 세제지원방안 마련

다. 事業成果

-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제정(2002.1 시행)을 통하여 노동부문에서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성과급방식의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복지향상 및 노사협력 제고를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토대 구축

共通 1) 訪日 後續措置 徹底 : 157(09-70-12)

가. 指示內容(1998년 10월 12일, 제47회 국무회의시)

- 금번 방일을 계기로 한·일 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음
-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

나. 措置內容

- 한·일 고위급 노사정 교류(매2년)
 - 아국 고위급 노사정대표단 방일('98.12.20-23)
 - 방일자 : 노동부장관(단장) 등 7명
 - 주요협의사항 : 고위급 노사정 교류 정례화,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 5개 사항
 - 일본 고위급 노사정대표단 방한('00.9.7-9)
 - 방한자 : 노동대신(단장) 등 10명
 - 의 제 : 「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방안」, 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 대한 한·일의 국제협력」
 - 협의사항 : 아·태지역 개도국대상 한·일 공동프로젝트 실시
- 한·일 실무급 노사정 교류(고위급교류가 없는 해)
 - 일본 노사정 실무대표단 방한('99.12.1-4)
 - 방한자 : 노동성 대신관방심의관(단장)등 7명
 - 주요협의사항 : 21세기를 맞이하는 노사정의 협력강화 방안 논의 및 세미나 개최 등
 - 아국 노사정 실무대표단 방일('01.12.13-15)
 - 방일자 :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등 7명
 - 주요협의사항 : 취업구조 다양화 문제 및 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(최초의 6자 연석회의 개최)

다. 事業成果

- 한·일 양국 노·사·정간의 이해와 협력 증대
 - 양국 노동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, 관련 경험 및 정보 교환
 - 양국 공동프로젝트(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ILO 세미나) 추진
- 여타 노동분야 교류·협력의 확대·증진
 - 양국간 노동관련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 활성화

共通 2) 公企業監査 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: 386(03-70-45)

가. 指示內容(2000년 9월 19일, 제38회 국무회의시)

-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
 -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
 -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

나. 措置內容

- 근로복지공단
 - 경영실적 평가제 도입 및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
 - 연·월차휴가수당 산출방법 개선(할증률 폐지)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
 - 즉석식 복권사업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외상매출금 확보방안 강구
- 산재의료관리원
 - 경영실적 평가제 도입 및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
 -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로 전환
- 한국산업안전공단
 - 자체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정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 수립
 -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로 전환
 - 연·월차휴가수당 산출방법 개선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
- 한국산업인력공단
 -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
 - 연·월차휴가수당 산출방법 개선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
 - 국제훈련센터 활성화방안 수립·시행
- 학교법인 기능대학
 -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국민주택자금 대출 이자율 수준으로 상향조정
 - 예산편성 범위내에서의 특별성과급 등 지급
-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
 -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
 -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·운영 개선
 - 조합원 자격관련 부적정한 단체협약 내용 개선

다. 事業成果

-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, 연·월차 휴가보상기준 하향 조정, 유급휴가제도 폐지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

共通 3) 설 綜合對策 마련 : 410(08-70-50)

가. 指示內容(2001년 1월 9일, 제2회 국무회의시)

- 설 연휴기간중 많은 사람들이 귀향하게 됨. 물가관리, 체불임금,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. 특히 인명사고가 없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노력해야 함. 치안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주기 바람

나. 措置內容

- '01.1.16 국무회의시 『설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』 수립·보고
 - 동 대책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불청산한 결과
 - 임금체불액 총 3,095억원중 1,299억원(42.0%) 청산, 1,796억원(375개업체, 28천명) 미청산
 - 59개업체 1,931명에게 65억원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으로 지급
 - 체불근로자 2,024명에게 28억원 생계비 대부

다. 事業成果

-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 수립·시행으로 체불근로자의 명절기간중 생활안정에 기여

共通 4) 人事請託 根絶 : 422(08-70-51)

가. 指示內容(2001년 2월 14일, 제6회 국무회의시)

- 국민의 정부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지연·학연·친소관계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됨
- 인사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.

나. 措置內容

- 인사청탁 근절방안 기본계획 수립(2001. 3)
- 인사청탁 근절방안 시행 주요내용
 - 승진(직위승진), 승진심사 등에 있어서 다면평가 실시
 - 승진후보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자질검증 실시
 - 자체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·시행
 - 부처내 인트라넷을 통한 승진예정자 알림, 인사일정 예고 등을 통한 인사행정 검증기능 강화
 - 장관이 직원 월례조회, 간부회의, 임명장 수여식 등을 통해 인사청탁 근절을 수시 지시
 - 업무추진실적 우수기관(부서)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우대
 - 부모봉양, 부부공무원 연고지 배치 등 인사를 통한 고충사항 해소
 -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통한 능력개발기회 균등 부여

다. 事業成果

- 인사청탁 근절 노력이 조직 전체로 정착
- 다면평가,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
- 승진내정자, 인사일정 예고제 실시로 인사행정의 신뢰성 향상
- 인사행정을 통한 소속직원에 대한 사기진작

4. 推 進 中 인 指 示 事 項

1) 失 業 綜 合 對 策 細 部 對 策 樹 立 推 進 : 10(03-70-01)

가. 指 示 內 容 (1998년 3월 26일, 제15회 국무회의시)

-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
 - ▲ 추가지시
 -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(1999년 3월 16일, 제9회 국무회의시)
 - 실업대책 추진(2000년 3월 24일, 노동부 업무보고시)
 -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(2000년 10월 23일, 제43회 국무회의시)
 - 사회안전망 보완(2000년 12월 5일, 제49회 국무회의시)
 - 눈높이 취업 활성화 대책마련 등(2001년 2월 2일, 노동부 업무보고시)
 - 실업·물가문제에 철저히 대처(2001년 2월 6일, 제6회 국무회의시)
 - 실직자에 대한 구직지원 강화(2001년 2월 20일, 제7회 국무회의시)
 - 일자리 수급 안정대책 추진(2001년 3월 27일, 제12회 국무회의시)
 - 실업대책의 내실화(2001년 5월 15일, 제19회 국무회의시)

나. 지 今 까 지 措 置 內 容

- 『98실업문제종합대책』(‘98.3.26), 『98하반기실업대책』(‘98.8.11), 『99. 1/4분기 고용 안정 및 실업자보호대책』(‘99.1.12), 『99종합실업대책』(‘99.1.19), 『일자리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』(‘99.3.22), 『중기실업대책』(‘99.7.23), 『겨울철고용안정대책』(‘99.10.29), 『2000년 종합실업대책』(‘00.1.11), 『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』(‘00.11.16), 『2001년 종합 실업대책』(‘01.1.17), 『청년실업자의 IT인력화 및 40~50대 중장년층을 위한 보완실업대책』(‘01.2.23)을 수립·추진
- 단기일자리 제공
 - 공공근로사업, 정부지원인턴제 시행, 단기일자리 제공
- 고용안정지원
 -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조정지원,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
-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
 - 실업자·여성실업자·장애인 직업훈련 및 정보통신분야 직업훈련 실시
- 실업자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
 - 실업급여 지급, 실업자 대부, 임금채권보장,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지급 및 자활지원

다. 向 後 推 進 計 劃

- ‘02년 실업대책 사업의 1/4분기 조기착수·집중시행
 - 공공근로, 직업훈련 등 주요실업대책 사업을 ‘02년 1월중 조기 개시
 - ※ ‘01년 12월까지 사업계획 작성·대상자 선발 완료

- 일자리 창출
 - 도로, 지하철 등 SOC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
 -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
 - 중소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
 - 장기실업자·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 지원
 -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등 구조개선을 통한 고용여력 증대

- 단기일자리 제공
 -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총 9,633억원의 재원으로 분기평균 137천명(연간 549천개)의 단기 일자리 제공
 - ※ 14개 중앙부처에서 24개 사업, 지자체에서 4개분야 91개 세부사업 실시

-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
 - 정보통신, 3D업종,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
 - '02년 실업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월에 20%이상, 상반기 70%이상 예산을 배정하여 조기 훈련 실시
 - ※ '02년 실업자 직업훈련 목표인원 181천명(실업자 150천명, 여성 및 장애인 5천명,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분야 26천명 훈련예정)

-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
 - 실업급여 지급, 실직자 임금채권 보호,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
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중 취업대상자 2만명을 의뢰받아 부적격자 및 조건 불이행자를 제외한 8천명을 사업대상으로 확정 지원

- 질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 - 동행면접 활성화, 성취프로그램 참여인원 확대
 - 지역별 고용정보 제공 등

- 실업예방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
 -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일시적 경영난 등에 따른 감원 최소화
 - 고용보험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 - 추진일정 : 개정안 마련('02.1월),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('02.2월), 규제개혁위원회, 법제처 심사('02.3~4월), 차관·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('02.5~6월)
 - ※ 『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서』 마련 등 피보험자 신고방법 간소화, 신고주기 단 일화 등
 - 여성·고령자·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

- 청소년의 경력형성 및 취업지원 강화
 - '02년부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 지원 (44천명, 600억원)
 - 『Clean 3D사업』추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촉진

2) 새로운 勞使文化의 創出 : 77(03-45-03)

가. 指示內容(1998년 6월 26일, 노동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)

- 전세계가 우리의 노사정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통과 성과를 나누는 노사 문화창출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공공부문 노사가 앞장서야 함
 - ▲ 추가지시
 -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신노사문화를 창조해야 함(2000년 1월 4일, 제1회 국무회의)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신노사문화 교육·홍보를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
 - 신노사문화 지역순회 설명회·연찬회 등 개최 (2,095회 199,901명)
 - 신노사문화 언론사 공동캠페인 실시 (매일경제, 한국경제, YTN, EBS)
 - 상생의 노사문화 공익광고 실시 (KBS, 지역CATV)
 - CREATE 21 노사한마음대축제 (KBS)
- 신노사문화 정책과제 추진
 - 열린경영 확대
 -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(3회, 65,000부)
 - “경영정보공개 이렇게 합니다” 제작·배포(100,000부)
 -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제작·보급(초판, 개정판 48,000부)
 -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등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지도·점검(6,653개소 점검, 2,051개소 조치)
 - 노조간부 경영이해 교육(24회 1,252명, 노동교육원)
 - 작업장 혁신 지원
 - 노무관리진단 서비스(12개소) 및 노무관리진단 매뉴얼 발간
 - 노무관리개선 컨설팅 실시(8개소 노동교육원)
 - 세계 초우량기업의 노사문화(500부) 등 국내외 우수기업의 사례 연구
 - 작업장혁신 CD 제작·배포(1000개)
 - 신노사문화 현장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지원 (SK그룹, 삼성그룹, LG전자)
 - 신노사문화 실천사례집 제작·배포로 타기업의 벤치마킹 촉진 (2,500부)
 -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
 -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역협의회 및 중앙협의회 운영
 -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원제도 확충
 -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기업 선정(124개소)
 - 동서지역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 개최(3회)
 - 노사화합행사 개최(7,756개소 1,184,349명 참석)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“노무관리진단서비스” 및 “노사관계개선 컨설팅” 등 예방적 노동행정 강화

-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
 -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 강화

- 근로자 참여를 통한 열린경영 확대 유도
 -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
 - 근로자의 경영이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

3) 勞使參與型 職業能力開發 體制 構築 : 337(05-45-09)

가. 指示內容(2000년 3월 24일, 노동부 업무보고서)

- 노사가 참여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『직업능력개발3개년계획』에 『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』을 포함하여 수립(2000.10)
 - 직업훈련정책 수립시 노동조합 참여 확대
 - ※ 『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』, 『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』 등
 -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수립된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 우선지원
 -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계획 수립·집행·평가를 위한 실천기준 개발 등
-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실천기준 개발(2001.4)
-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시범운영(2001.7)
 -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훈련컨소시엄 주체와 중소기업 490여개사 참여중
 - ※ 시범운영기간 : 2001. 7~2002. 6.
- 노사합의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요건 완화(2001.7)
 - ※ 단체협약,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수강이 인사관리에 우대되는 경우 지정요건을 완화(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 개정)
- 근로자직업훈련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(2001.7)
 - 근로학습재원 조성, 직업훈련정책과정에 노사 참여 확대 등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 마련 및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분석
- 4~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시스템 시범실시
-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『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』 수립 유도
-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(“2002년)

4) 週 5日勤務制의 早速한 施行 : 530(05-45-11)

가. 指示內容(2001년 7월 24일, 제30회 국무회의시)

- 주 5일 근무제는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와 건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시키며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됨
-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다뤄 노사양측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람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('00.5.17)
-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('00.10.23)
 - ※ ①주40시간, 연간 2,000시간 이내로 단축 ②휴일·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·휴가일수 확대 ③업종별·규모별 단계적 시행
- '01년 들어 특위 전체회의, 워크숍 등을 통해 세부쟁점에 대해 집중논의
 - 5.26~27 및 7.13~14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
 - 8.26~27 공익위원 간담회시 “특위공익위원 입장” 마련
 - 9.5 특위 공익위원안 및 10.5 노사정위 차원의 공익위원안을 본위원회에 상정·보고 및 접수
 - 10.9 고위협상팀 회의결과, 노·사·정 합의시안 마련
 - 10.16 실무협상논의결과가 언론보도됨에 따라 논의 중단되었으나 11월초부터 재논의
 - 11.13 한국노총 근로시간단축 논의중단 선언
 - 11.28 이후 노사대표를 설득, 12.12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한국노총은 다시 협상불참을 선언
-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
 - '01.8.1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(국민 74.1% 찬성)
 - '01.8.14 『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』 발표(한국노동연구원)
 - '01. 8.21 『주5일 근무, 새시대가 열립니다』 팜플렛 35천부 제작·배포
 - '01. 8.22 『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』 4천부 제작·배포
 - '01. 8.23 100인 이상 사업체 토요일휴무제 실시현황조사 발표(100인 이상 전사업장 5,053개사중 9.8% (497개소)가 이미 자율적으로 토요일휴무제를 실시)
 - '01.9.7~9.12 서울·부산 등 5대도시 『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순회 설명회』(노사정위원회)
 - '01.10.10 『일본의 근로시간단축 사례 세미나』 개최(한국국제노동재단, 일본국제노동재단)
 - 7.24~10.19까지 학계·언론계·노사단체 간담회 21회, 각종 인터뷰 14회 실시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노사정위 논의가 마무리되고 논의결과가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내 의견조율을 거쳐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

共通 1)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실천 : 366(09-70-39)

가. 指示內容(2000년 5월 9일, 제19회 국무회의시)

-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했음을 실감할 수 있음
-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. 특히 부처간·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
-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·보고해 주기 바람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
 - 노동시장정보망 확충 : 시스템 정비·확충('00.10 1차, '01.2 2차 기능개편 완료)
 - 1월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(고용보험법 개정안 '01.11.22 국회 제출)
 - 보험관리시스템 개선 : 고용보험 인별 관리체제 구축방안 마련('01.1.1 시행)
 - 장애인·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
 -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융자(380명, 156억원 지급),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(59,415개 소 39,867백만원)
 -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('01.8.1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)
 -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지원을 위한 점포임대 지원(407가구 168억원)
 -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('01.8.1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)
 - 육아휴직대상 확대(남녀 모든 근로자), 육아휴직급여 지급(월 200,000원) 등
 - 산전후휴가기간 연장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화('01.8.14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)
 - 산전후휴가기간 확대(60일→90일), 출산휴가급여 지급(최고 135만원)
- 창조적 지식근로자 양성
 - 미래유망 50개 직종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·보급('00.2~4)
 - 신산업분야 10개과정 훈련콘텐츠 개발 및 DB서버 1대 구입('01.12)
 - '01년 : 인터넷훈련 28,615명, 원격화상훈련 1,908명 실시
 - 『직업훈련정보망』 개선('01.5)
 - 정보검색기능 강화, 메일링서비스 기능추가 등
 - HRD 종합정보망 구축계획 수립('01.12)
 - 민간자격 공인제도 활성화
 - 2000년도 28개 민간자격 국가공인('00.12~'01.1)
 - ※ 민간자격 공인신청 : 217개 종목
 - 네트워크관리사 등 8개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공인심의완료('01.12)
 - ※ 민간자격 공인신청 : TEPS 등 117개 종목
 - APEC 회원국간 『우수기술·기능인 상호인증제』 도입추진
 - 제8차 APEC Engineer 심사등록회에서 APEC Engineer 심사등록예정자 184명 승인('01.12)
 - ※ 2001.11월 현재 APEC Engineer 171명 배출
 - 근로자 『1인2자격갖기』 운동 전개
 - '01년 9월 현재 1,648,393명 신청, 846,271명 검정시행

- 근로자 복지확충과 소득분배구조 개선
 - 최저임금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전사업장 확대 적용
 - 최저임금법('00.10.23), 임금채권보장법('00.7.1) 개정
 - '01.9~'02.8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2.6% 인상된 시간급 2,100원, 월환산액 474,600원으로 결정·고시('01.8.6)
 -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('01.8.14)
 - 산재보험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 -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('00.7.1)
 -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, 휴게시간 중 재해, 행사중 재해 등 업무상재해 인정범위의 합리적 개편
 - 중장기 재활발전계획 수립('01.1.11)
 - 재활상담원 증원(9명→49명) 등 직업재활상담제 전면 실시
 -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조치
 - 50인미만 사업장 기술 및 자금지원 확대
 - 5인미만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(시행령 '01.8.5, 시행규칙 '01.9.28 개정)
 - 산재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
 - 안전체험 학습장 설치
 - 보호구 성능 강화를 위한 단속강화규정 개정
 - 근로자 건강보호사업 추진
 -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집중관리
 - 스트레스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 강화
- 국민에게 사랑받는 노동행정 구현
 -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노동행정 고객만족도 조사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1월미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후속조치(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)
-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제도 홍보
- 실용영어, 네트워크관리사 등 8개 민간자격에 대한 소관부처별 국가공인
-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지급 수준 상향 조정
 - 기능장려금 수준을 2003년까지 매년 10% 인상하여 지급
- 직업재활센터 1개소 추간 건립
 -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계약체결(현재)

共通 2) 4大 部門 12大 核心改革課題의 차질없는 推進 : 392(03-70-46)

가. 指示內容(2000년 10월 4일,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)

-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
 - ▲ 추가지시
 -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(2000년 10월 23일, 제43회 국무회의시)
 - 4대부문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(2000년 10월 31일, 제44회 국무회의시)
 - 2월말까지 개혁의 2단계를 마무리하고 그후부터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개혁을 해 나가야 함(2001년 1월 22일, 제4회 국무회의시)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
 -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('00.5.17)
 -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 합의('00.10.23)
 - ※ ①주40시간, 연간 2,000시간 이내로 단축, ②휴일·휴가의 합리적 조정 및 실제사용 휴일·휴가일수 확대, ③업종별·규모별 단계적 시행
 - '01.8.26~27 공익위원 간담회시 “특위공익위원 입장” 마련
 - '01.10.9 고위협상팀 회의결과 노·사·정 합의시안 마련
 - '01.11.13 한국노총 근로시간단축 논의 중단선언
-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제정
 - '00.10.23 노·사·정 법제정 합의
 - '00.11.25 법안 국회제출(신기남 의원 등 118인 공동발의)
 - '01.7.18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
 - '01.8.14 근로자복지기본법 공포
 -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('01.12.27) 및 시행규칙('01.12.31) 제정
-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마련
 - 『비정형근로자 대책』 수립('00.10.4)
 - 『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』 세부추진계획 수립·시행('00.11.16)
 - 비정규직 유형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개발·시행
 - ※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('00.1.3), 단시간근로자('00.10.23), 건설일용근로자('00.12.22), 재택근로자('00.12.29)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개발·보급
 - 1월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('01.11.22)
 -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 공사규모를 100억원이상에서 50억원으로 확대 : '01.8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
 - 비정규직 실태조사
 - 노사단체, 관련부처 및 학계전문가 회의(5~6월), 노사정위 『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』회의(7.23) 등을 거쳐 비정규직 실태조사표 마련한 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실시('01.8월, 통계청)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정위 논의가 마무리되고, 논의결과가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내 의 견조율을 거쳐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결정
- 1월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후속조치(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)

共通 3) 公共部門 勞使紛糾 徹底 對處 : 397(03-70-48)

가. 指示內容(2000년 10월 23일, 제43회 국무회의시)

-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.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.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·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.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노동계와의 대화채널 마련
 -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, 공공연맹·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 위원장 등과 수시 면담, 유선 등 통해 불법시위·집회 자제 및 법과 원칙에 의한 노동운동 지도
 - 노사협력관, 노사조정담당관 등은 민주노총 배중배 부위원장 등과 4.23부터 10차례에 걸쳐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
 - 장기분규 사업장 상반기 39개소 중 22개소 해결
 - 하반기 34개소 중 해결 가능사업장부터 우선 해결방안 모색 중
 -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는 산하 연맹간부, 각종 노사단체와 수시 간담회 개최
-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
 - 사회관계장관회의(25회)를 통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및 공공부문 피해 최소화 위한 기본방향 수립
 - 사안별 공공부문 노사정회의 등 개최, 노사관계지원단회의 개최로 공공부문 현안문제 해결 위한 방안모색
 - 한전기공, 7대도시 시내버스, 항공4사, 대한항공조종사노조,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공투본(6개사 노조) 등
- 제도적 기구로의 복귀 설득
 - 민주노총과의 정례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설득·지도
- 연대시위·파업 최소화 및 평화적 집회 개최지도
 - 항공4사 연대파업, 한국전력, 한전기공, 대우자판, 7대도시 시내버스, 현대중공업, 민영화저지 공투본 등 분규 사전예방
 - '01.6.12 연대파업시 민주노총은 당초 125개소 5만5천명 파업돌입을 발표하였으나 노동부의 적극 지도로 68개소 1만5천명 참여
 - '01.7.5 연대파업시 민주노총은 88개소 10만명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노동부의 적극 지도로 21개소 1만5천명만 참여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노사문제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내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불법행위시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함으로써 합법적 노사관계 구축

共通 4) 女性의 職場生活을 위한 與件造成 : 521(05-70-57)

가. 指示內容(2001년 4월 18일, 여성부 업무보고서)

- 젊은 직장여성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육아문제일 것임.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
- 여성도 사회의 주체로서 국가·사회·가정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육아휴직제도 활성화
 - 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(11.1 시행)
 - 육아휴직대상을 남녀 모든 근로자로 확대
 - 육아휴직중 소득보전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지급(월 200,000원)
 - 육아휴직후 복직보장 등
-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강구
 -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해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 개정·시행
 -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
 -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지급(최고 135만원)
-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
 -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용자 : 2개소 125백만원
 -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: 1,525명 2,350백만원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제도 홍보
 - 설치비 지원 : 24개소 20억원
 - 설치비 용자 : 10개소, 20억원
 -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: 월 60~65만원

共通 5) 電子政府事業의 차질없는 推進 : 531(07-70-58)

가. 指示內容(2001년 8월 7일, 제32회 국무회의시)

- 전자정부 수립은 국민의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며, 부패없는 깨끗한 정부수립,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
- 전 부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중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람. 아울러 국민에게도 잘 알려 국민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람.
 - 복지부·노동부 : 4대 보험의 연계정보화 사업에 철저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
 - 4대 사회보험 적용·자격업무 등에 대한 one-stop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
 - 공동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DB를 구축하여, 신속한 정보공유체제 마련
 - 사회보험 누락사업장·가입자 발굴 및 보험간 불일치 정보의 정합성 확보
 - 정책수립시 활용가능한 기초통계자료 제공
- 시스템 구축 기관 선정 및 소요예산 분담방안 합의
 -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시스템 구축기관으로써 간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, 소요비용의 50% 부담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('02. 2월초)
-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및 법·제도 정비 ('02. 2월 ~ 6월)
- 서비스 개시 ('02. 7월)
- G4C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및 서비스 확대 ('02. 11월)
 - ※ G4C : 주민, 부동산, 자동차, 기업, 세금 등 5대 민원업무 혁신사업